

2022년도 재무감사(일상경비 집행실태 등) 결과보고

1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22. 9. 1.(목) ~ 10. 21.(금) [33일간]
- 감사대상 및 범위

구 분	수감기관	범 위
일상경비 집행실태	본청 및 의회사무과	2021. 9월 ~ 2022. 8월(1년간) 집행분
	보건소	2019. 11월 ~ 2022. 8월(3년간) 집행분
보통예금계좌 전수조사	본청 및 의회사무과, 보건소, 등	2022. 1월 ~ 2022. 6월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 보통예금계좌 운영 현황

2 감사 결과

- 처분요구내역 총괄

(단위 : 건/천원)

행정상			재정상				
계	시정	주의	계	회수	변상	추징	기타
79	-	79	-	-	-	-	-

3 주요 지적사항

□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절차 미준수

- 『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』(행정안전부 훈령) - 별표 및 별지서식 - (별표 5)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- 1.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, 등록 및 관리 - 3.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,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(품의)을 한 후 거래사업자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 할수 있다(특근매식비의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).라고 규정되어 있다.
- 또한 동 훈령에 따라 회계담당자는 거래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먼저 발급받고 발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하도록 해야 하며,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·비치해야 한다.

☞ ○○과 등 27개 부서에서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선 발급하거나 미첨부, 또는 5일이 경과하여 대금을 지급,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작성·비치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

□ 지출증빙서류 미비

- 『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』 제137조의2(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)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

지방자치단체와 공사, 물품 구매·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163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.

☞ ○○과 등 17개 부서에서는 임차료와 매식비 등 대가지급 시 증빙서류 첨부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

□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

- 『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』(행정안전부 훈령) - 3. 별표 및 별지 서식 - (별표 5)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』(행정안전부 훈령)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.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『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』에는 각 비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및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다.

☞ ○○과 등 10개 부서에서는 각 비목별 범위 및 대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

□ 신용카드 사전 집행품의 미이행

- 『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』에 의거 “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 회계절차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,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(품의)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하며(원인행위) 신용카드 결제일에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(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)한다.(지출)라고 되어 있다.

☞ ○○과 등 15개 부서에서는 신용카드 사전 집행품의를 이행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품의를 지연 등록한 사실이 있음

□ 공공요금 등 납부업무 소홀

- 『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』 제33조(지출 및 지급의 원칙)에 따르면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☞ ○○과 등 6개 부서에서는 공공요금 등에 대해 납기일이 지나 납부한 사실이 있음

□ 회계관계공무원 위임에 관한 사항 처리 부적정

- 『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』 제2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)에 따르면 본청 각 실·과의 서무업무담당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지정하고,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·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.

☞ ○○과 등 3개 부서에서는 일상경비출납원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

□ 대금지급 지연

-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제18조(대가의 지급)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

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67조(대가의 지급)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(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)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☞ ○○과에서는 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5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